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05.6.16

'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검 토 보 고 서

고제보건지소 신축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1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5. 6. 10

라. 의안번호 : 제2005 - 39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현 고제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89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다.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구분	소재지	물건	수량 (㎡)	예정금액 (백만원)	비 고
취득	고제면 농산리 200-19	건 물	339.12 (1층259)	552,637	철콘스라브조(2층)

○ 재산의 처분

- 기존 건물 벽돌조적스라브조 168.3㎡를 철거하나 장부가격 22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2억원 이상 처분시 승인)에 의한 승인대상이 아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현재 사용중인 고제보건지소는 1987년 건물된 조적벽돌 스투브조 건물로써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건물로 신축하려는 것임.
- 동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승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한 것임.
-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도 고향, 거기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시 승인하였으나 행정절차협의 지연등으로 명시이월되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 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대상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